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9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신성범 · 조은희 · 김예지
이성권 · 박덕흠 · 최수진
이인선 · 서천호 · 엄태영
김태호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151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인계 그”를 “인계,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그”로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수량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필요한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및 투표용지의 봉합·보관·<u>인</u> <u>계</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p>	<p>-----<u>인</u> <u>계,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구축</u> <u>· 운영 그</u>----- -----.</p>
--	--